

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영재학교 입학전형) ①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.

②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

1. 영재학교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 학교는 시·도 교육규칙,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2(영재학교 입학전형) ①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② 영재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 <u>1. 영재학교의 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 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2.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는 시·도 교육규칙, 국립학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(고교교육혁신과)	
연 락 처	(044) 203 - 6686